

**한미FTA 제 11.16 조에 의거하여
중재청구권을 제출할 의사 통지서**

외 6인

신청인

대한민국 정부

피신청인

신청인 (이메일:)

변호사

한미자유무역협정 제 11.16 조 에서 요구하는 [REDACTED] 외 6인 (이하 "신청인들" 이라 한다) 와 대한민국 사이의 분쟁에 대한 진술.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1.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11.15조가 고려하는 협의와 협상을 통해 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분쟁 투자자이자 청구인 인 신청인들은 제11.16조에 의거한 중재 청구서 제출 의향서를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에 송달합니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 계약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제 11.16조 2항

가. 지체 없이 지불 하여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 (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REDACTED]
[REDACTED] 과 [REDACTED] 토지는 신청인들의 부친
인 [REDACTED]가 1966년부터 1971년 사이에 취득하여 마련한 토지
로서, 신청외 [REDACTED]가 1995. 1. 7., 모친인 [REDACTED]가 1996. 5. 12.
각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신청인 형제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
속받아 각 1/7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신청인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이후 모두 미국 시민
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의 토지는 2018. 7. 4. '구리갈매역세권지구 3차 관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이후 2020. 1. 10. 지구지정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고시가 있는 후인 2020. 4. 29 이권 토지
들의 취득을 위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제시한 손실
보상액은 각 1,861,265,180원 이었습니다.

■■■■■은 2020. 5. 19. 형제들에게 부동산의 보상계약 체결 및 매각자금 해외송금 처리에 전권을 위임 받아 위임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11. 12. 구리시 갈매동 [REDACTED]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각 1,957,420,020원으로 인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12. 30.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의정부 법원에 현금 1억원에 세금을 제외한 보상금은 채권으로 의정부 법원에 공탁 하였습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법무법인 [REDACTED] 대리인으로 이의 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6. 24. 에서 보상금을 각 2,129,537,020원으로 재결서가 [REDACTED] [REDACTED]에게는 2021, 7. 2에 한국 주소로 도달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미국 주소로 2021. 8. 11부터 2021. 8. 15에 도달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함으로 2024. 3. 18 부터 2024. 4. 4. 까지 이-메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와 협상을 요청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더 이상의 협의와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2항 가. '지체 없이 지불 되어야 한다'와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재결후 받은 채권은 증권사를 통하여 현금화 한 후 바로 미국으로 송금을 하였지만 이의 재결 후 받은 채권은 3-4군데 증권사에 알아보았는데 받아주는 증권사가 없어 아직 채권으로 보유 중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1.16조 제2항 나. '수용이 발생하기 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감정가는 2018. 7. 4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발제한구역의 토

지와 비교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2019. 12. 21 국토교통부 지구계획 승인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913호)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규제가 해제된 수용일 직전인 2020. 12. 30. 시장가격으로 감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4 3항은 개발제한 구역은 간접수용으로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인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2020. 12. 31. 시장가격으로 추가 손실

보상금은 각자 1,500,000달러

위 토지들은 1971. 7. 3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수용의 재결일 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신청인들은 거의 5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아온 고통, 환율이 1,100원 초반에서 현재는 1300원 후반으로 올라 입은 손실과, 3-4년간의 기회비용 손실을 합쳐 각자 1,00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원합니다.

신청인

핸드폰

서명